



금 융 감 독 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사본수신

제목 지문정보 수집금지 및 파기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기로 결정(2014.8.21)하고, 붙임 1, 2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통보(2014.10.22)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붙임 3과 같이 지문정보 수집 금지 및 파기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각 협회 및 금융회사 등에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신용정보부-314, 2015.1.26), 여신금융협회(여협신 제2015-5호, 2015.1.26), 생명보험협회(생협계 제110호, 2015.1.19), 손해보험협회(손보협소 2440-20, 2015.1.21), 금융투자협회(정보시스템부-111, 2015.1.26), 저축은행중앙회(기획-34, 2015.1.27) 등 참조

4.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신규로 수집해서는 안 되며, 기 보유 중인 지문정보의 경우 '19년까지 전자적 파일은 모두 파기하여야 하고, 서류와 같은 비전자적 파일은 접근통제를 강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파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이에 우리원은 매년 각 금융회사가 동 대책에 따라 지문정보 파기 등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황을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본인확인 등을 위한 신분증 사본저장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년까지 지문정보 파기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결정문 송부 공문(인권위) 1부

붙임2.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결정문(인권위) 1부

붙임3.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금융위) 1부. 끝.

금융감독원장



수신자

금융지주, 일반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자산운용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증권사, 선물사, 저축은행, 대부업자, 신용정보업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신용정보협회 회장, 한국여신금융협회 회장, 한국증권업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자산운용협회 회장, 종합금융협회 회장, 농협회원조합 대표이사, 한국선물협회

담당부서 IT·금융정보보호단 금융정보보호팀
10/27 10/27

선임검사역 최진영 팀장(J) 장성욱 선임국장 전결 10/28 최성일

합의자

시행 IT정보호-131 (2016.10.28.) 접수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7334 팩스번호 02-3145-7339 / blastjy@fss.or.kr / 비공개(5)

“창의적 금융, 비조치의견서로 도와드립니다.”